4) 건설기술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라목	영업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정지 6개월	6천만원		
5) 법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마목	영업정지 2개월	2천만원	영업정지 3개월	3천만원	영업정지 6개월	6천만원
6) 법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바목	경고	해당 없음	경고	해당 없음	영업정지 1개월	1천만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해당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부과하는 영업정지 처분 및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4월 10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관 김 현 미

◉대통령령 제2879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5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21조제7항”을 “법 제21조제8항”으로 한다.

제12조의2 중 “법 제21조제8항”을 “법 제21조제9항”으로 한다.

제12조의3 중 “법 제21조제9항”을 “법 제21조제10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손실을 받은 해당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법 제50조제3항”을 “법 제50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법 제21조제9항”을 “법 제21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40조제6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법 제21조제10항”을 “법 제21조제12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 1)·2)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호가목의 제20호, 제25호, 제26호사목 및 노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중처분하여야 한다.

별표 3 제1호마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제16호다목·라목의 위반내용란 중 “법 제16조제3항”을 각각 “법 제16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0호	감차명령	노선폐지명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3호의 위반내용란 중 “법 제21조제7항”을 “법 제21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제24호부터 제39호까지를 각각 제26호부터 제41호까지로 하며, 같은 목의 제23호의2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목의 제24호(종전의 제23호의2)의 위반내용란 중 “법 제21조제9항”을 “법 제21조제10항”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법 제21조제1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6	사업일부정지(90일)	감차명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6호(종전의 제24호)의 위반내용란 가목부터 노목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10항”을 “법 제21조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제26호(종전의 제24호)사목 및 노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운송사업자가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사업일부정지(5일)	사업일부정지(10일)	사업일부정지(15일)

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90일)	감차명령	

별표 3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 중 “제34호”를 “제36호”로 하고, 같은 비고 제15호 중 “제31호”를 “제33호”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1조제5항”을 “법 제21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1조제6항”을 “법 제21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21조제8항”을 “제21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퍼목 및 허목을 각각 고목 및 노목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법 제21조제1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2	50	75	100

별표 6 제2호카목(종전의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4호	50	75	100

별표 6 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5호	50	75	100

별표 6 제2호너목(종전의 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법 제26조제1항제6호·제7호·제7호의2 · 제7호의3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4호	10	10	10

별표 6 제2호 비고 중 “제2호 나목 · 라목 · 처목 및 커목”을 “제2호나목 · 라목 · 터목 및 퍼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5호,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6호의 위반내용란 가목부터 노목까지 외의 부분, 별표 5 제1호의 제17호, 별표 6 제2호차목·타목 및 너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식시간에 관한 유효기간 등) ①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6호노목, 별표 5 제1호의 제18호허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6호노목, 별표 5 제1호의 제18호허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대폐차로 충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까지 법률 제1434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대폐차로 충당할 수 있었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0호 및 같은 목의 제24호사목·노목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을 한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단위: 만원)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위반 횟수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시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수요응답형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 인가 또는 변경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호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호										
가.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보유대수×10)가 다음의 기준 이상이 된 경우			500	500	500		500	500	500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경우: 2											
나) 운행형태가 직행 및 일반인 경우: 3											
3)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4)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6)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나. 5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 1건의 교통사고			60	60	60	60	60	60	60		
2) 2건의 교통사고			120	120	120	120	120	120	120		

다.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비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8명 이상 9명 이하			1,600		800	800	1,600	1,200	800	
2) 5명 이상 7명 이하			1,200		400	400	1,200	800	400	
3) 2명 이상 4명 이하			800		200	200	800	400	200	
라.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비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0명 이상 19명 이하			1,200		400	400	1,200	800	400	
2) 6명 이상 9명 이하			800		200	200	800	400	200	
3. 법 제4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6호									
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을 한 경우		1차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2차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차 이상	540	540	540	540	540	540	540	540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1차	180	180						
		2차	360	360						
		3차 이상	540	540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		1차			40	40			40	
		2차			80	80			80	
		3차 이상			160	160			160	

라.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업무범위 또는 면허기간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1차	180	180	180	180			180	
		2차	360	360	360	360			360	
		3차 이상	540	540	540	540			540	
마.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다만,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와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대여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1차	10	10	10	10	20	20	10	20
		2차	15	15	15	15	30	30	15	30
바. 법 제4조 및 이 영 제3조제2호라목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		1차				120				
		2차				240				
4. 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 중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5조제1항제7호	1차	90	90	90		90	90	90	
		2차	180	180	180		180	180	180	
		3차 이상	270	270	270		270	270	270	
5.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0호									

가. 운임 및 요금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을 개시한 경우		1차	40	40	40	20			40	
		2차	80	80	80	40			80	
		3차 이상	160	160	160	80			160	
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등 외에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1차	20	20					20	
		2차	30	30					30	
		3차 이상	60	60					60	
다.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 운송을 거절한 경우			10	10					10	
6. 법 제9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 또는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1호									
가. 운송약관 또는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100	100	100	50	100	100	100	100
		2차	150	150	150	75	150	150	150	150
나. 신고한 운송약관 또는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60	60	60	30	60	60	60	60
		2차	120	120	120	60	120	120	120	120
		3차 이상	180	180	180	90	180	180	180	180
7. 법 제10조(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2호									
가. 임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 1) 결행 2) 도중 회차 3)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연장 운행 4) 감회 또는 증회 운행		1차	100	100					100	
		2차	150	150					150	
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경우		1차					120	120		120
		2차					180	180		180
		3차 이상					360	360		360

다.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1인 사업자는 제외한다)·영업소·정류소 또는 차고를 신설·이전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나 영업소별 차량 대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1차	100	100	100	50	100	100	100	100
		2차	150	150	150	75	150	150	150	150
라. 노후차의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1차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2차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마.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미리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20	20						
		2차	40	40						
바. 그 밖에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1차	10	10	10	10	10	10	10	10
		2차	15	15	15	15	15	15	15	15
8.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4호	1차	360	360	360		360	360	360	
		2차	720	720	720		720	720	720	
		3차 이상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9. 법 제14조(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5호									

가. 법 제14조제1항(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1차	360	360	360		360	360	360	360
		2차	720	720	720		720	720	720	720
		3차 이상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나. 법 제14조제4항(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한 경우		1차	360	360	360		360	360	360	360
		2차	720	720	720		720	720	720	7201,080
		3차 이상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7호		20	20	10	10	20	20	10	
11.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8호									
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한 경우		1차		60						
		2차		120						
		3차 이상		180						
나. 법 제18조제3항에 다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180						
		2차		360						
		3차 이상		540						
12.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0호	1차	500	500	360	360	500	360	360	
		2차	1,000	1,000	720	720	1,000	720	720	

13.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2				360						
14.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상호를 변경하지 않거나 상호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3				240						
15. 법 제21조제8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4	1차			180	180					
		2차			360	360					
		3차 이상			540	540					
16. 법 제21조제10항을 위반하여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5	1차					180				
		2차					360				
		3차 이상					720				
17.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법 제21조제1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6	1차	360	360			360				
		2차	720	720			720				
18. 법 제21조제1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1호										
가. 택시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은 제외한다)		1차			40	40					
		2차			80	80					
		3차 이상			160	160					
나. 운임 또는 요금을 받고 승차권이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시내버		1차		10			10	10	10	10	
		2차		15			15	15	15	15	

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경우와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자는 제외하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여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40	40	40	40	40	40	40	
라. 자동차 안에 게시해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20	20	20	20	20	20	20	
	2차	40	40	40	40	40	40	40	
마.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1차	20	20	20	20	20	20	20	
	2차	40	40	40	40	40	40	40	
바. 운송사업자가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1차	60	60	60	60	60	60	60	
	2차	120	120	120	120	120	120	120	
	3차 이상	180	180	180	180	180	180	180	
사. 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 압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1차	360	360					360	
	2차	720	720					720	
	3차 이상	1,080	1,080					1,080	
아. 차실에 냉방·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1차	60	60	60	60	60		60	
	2차	120	120	120	120	120		120	
	3차 이상	180	180	180	180	180		180	

자. 차 안에 안내방송장치 및 정차신호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차	100	100					100	
	2차	200	200					200	
차. 차내 안내방송 실시 상태가 불량한 경우	1차	10	10					10	
	2차	15	15					15	
카. 버스의 앞바퀴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한 경우	1차	360	360			360	360	360	
	2차	720	720			720	720	720	
	3차 이상	1,080	1,080			1,080	1,080	1,080	
타. 앞바퀴에 튜브리스타이어를 사용해야 할 자동차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차		360			360			
	2차		720			720			
	3차 이상		1,080			1,080			
파. 원동기의 출력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1202	12024			1202		12024	
	2차	40	0			40		0	
	3차 이상	360	360			360		360	
하.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격벽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차	180						180	
	2차	360						360	
	3차 이상	540						540	
거. 그 밖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한 경우	1차	20	20	20	20	20	20	20	
	2차	30	30	30	30	30	30	30	
너.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10	10	10	10	10	10	10	
	2차	15	15	15	15	15	15	15	
더.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60	60	60	60	60	60	60	
	2차	120	120	120	120	120	120	120	
	3차 이상	180	180	180	180	180	180	180	
러. 차량 정비, 운전자의 과로 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 안전 수송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1차			20	20			20	
	2차			40	40			40	

머.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1차			180					
	2차			360					
버. 운송사업자가 차내에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	10	10	10	10	10	10	
서.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하여 방송하게 하지 않은 경우	1차		180			180			
	2차		360			360			
	3차 이상		540			540			
어. 전세버스운송사업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2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기를 게을리 한 경우	1차					180			
	2차					360			
	3차 이상					540			

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하기를 게을리 한 경우	1차					180			
	2차					360			
	3차 이상					540			
처.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하기를 게을리 한 경우	1차					180			
	2차					360			
	3차 이상					540			
커.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운행 요청을 거부한 경우	1차							180	
	2차							360	
	3차 이상							540	
터.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및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피로·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1차	180	180	180		180		180	
	2차	360	360	360		360		360	
	3차 이상	540	540	540		540		540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해당 운수종사자를 대신하여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하지 않은 경우										
퍼.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차	60	60	60		60		60	
		2차	120	120	120		120		120	
		3차 이상	180	180	180		180		180	
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360	360			360			
		2차 이상	720	720			720			
19. 법 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2호	1차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2차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3차 이상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20.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3호	1차	30	30	30		30	30	30	
		2차	60	60	60		60	60	60	
		3차 이상	90	90	90		90	90	90	
21.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5호	1차								360
		2차								720
		3차 이상								1080
22.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6호	1차								180
		2차								360
		3차 이상								540

23. 법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2호의2	1차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2차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24. 1년에 3회 이상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3호		20	20	20	10	20	20	20	20
25.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4호									
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차	60	60	60	30	60	60	60	60
		2차	120	120	120	60	120	120	120	120
		3차 이상	180	180	180	90	180	180	180	180
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1차	40	40	40	40	40	40	40	40
		2차	80	80	80	80	80	80	80	80
26. 법 제84조에 따른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5조제1항제36호	1차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2차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27. 관할 관청이 면허·허가·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8호	1차	180	180	180	180			180	
		2차	360	360	360	360			360	
		3차 이상	540	540	540	540			540	

비고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위반행위란의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통사고건수의 산정은 경상사고인 경우에는 0.3건, 중상사고인 경우에는 0.7건,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1건으로 각각 계산한다.

3.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는 다음 표와 같다(위반행위란의 제2호다목 및 라목 관련).

(단위: 만원)

위 반 내 용	관 계 법 조 문	과 징 금 의 액 수			
		시 외 버 스 운 송 사 업 (운행형태별)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고 속	직 행	일 반	
가.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3호				
1) 8명 이상 9명 이하		3,600	2,400	1,200	1,200
2) 5명 이상 7명 이하		2,400	1,600	800	800
3) 2명 이상 4명 이하		1,200	800	400	400
나.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3호				
1) 10명 이상 19명 이하		2,400	1,600	800	800
2) 6명 이상 9명 이하		1,200	800	400	400

4. 1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위반행위란의 제2호라목2)에 따라 처분한다.

5. 위반내용란의 제7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목의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별로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추가 위반횟수(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횟수는 제외한다) 1회당 위 표의 처분기준 금액의 50%를 더하여 일괄 처분한다.

6. 고의·중과실로 위반내용란의 제12호, 제17호 및 제18호바목·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가중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2. 터미널사업

(단위: 만원)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위반 횟수	과징금의 액수			
			인구 100만명 이상의 행정구역	인구 3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의 행정구역	인구 2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의 행정구역	인구 2만명 미만의 행정구역
1.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터미널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15호					

가. 신고를 하지 않고 터미널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나.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인 터미널운송사업자를 합병한 경우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2.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터미널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6호					
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휴업한 경우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폐업한 경우		1차	300	200	150	70
		2차	600	400	300	140
		3차 이상	900	600	450	210
다.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1차	300	200	150	70
		2차	600	400	300	140
		3차 이상	900	600	450	210
3.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2호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않고 터미널 시설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7호					
가.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나. 공사시행 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한 경우		1차	300	200	150	70
		2차	600	400	300	140
		3차 이상	900	600	450	210

다. 공사시행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라.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5.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지 않고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8호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9호	1차	300	200	150	70
		2차	600	400	300	140
		3차 이상	900	600	450	210
7.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터미널사용약관을 시행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0호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1호					
가. 터미널사용자 또는 터미널 이용객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거나 편리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나. 인가된 시설 사용료 외의 요금을 징수한 경우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다. 터미널의 시설기준 또는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터미널을 관리한 경우		1차	200	150	100	50
		2차	300	225	150	75
		3차 이상	600	450	300	150
라.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300	200	150	70
		2차	600	400	300	140
		3차 이상	900	600	450	210

9. 법 제43조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터미널의 위치·규모 또는 구조·설비를 변경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2호					
가. 터미널의 위치 또는 규모를 인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1차	300	200	150	70
		2차	600	400	300	140
		3차 이상	900	600	450	210
나. 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를 인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1차	300	200	150	70
		2차	600	400	300	140
		3차 이상	900	600	450	210

비고: 행정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시·읍·면을 기준으로 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단위: 만원)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과징금 액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법 제49조의6제1항제3호	240
2. 법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의6제1항제3호의2	100
3.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의6제1항제4호	120
4. 법 제4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의6제1항제4호의2	100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의6제1항제5호	120
6. 법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의6제1항제6호의3	360
7. 법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의6제1항제6호의4	120
8. 법 제49조의8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의6제1항제7호	50
9.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의6제1항제8호	360

◇개정이유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代廢車)하는 경우 차령이 6년 이내인 자동차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명시하며, 휴식시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령이 6년 이내인 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있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휴식시간 보장 규

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 시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시기 개선(제15조제1항)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운행명령과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신청 시기 규정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차령이 6년 이내인 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있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범위(제40조제6항)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있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범위를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정함.

다. 주요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정비(별표 3 및 별표 5)

휴식시간 보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주요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행정처분과 같이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4월 10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장 관 김 영 춘

◉대통령령 제28794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4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